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4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최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성배, 이숙자,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홍국표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산업창업, 재창업,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지원 관련 대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창업, 신산업창업,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책무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 다. 창업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안건 발생 소집하고, 사유 종료시 해산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창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명확화(안 제11조)

마. 위원회 간사를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함(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7년”을 “7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7.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창업기업 등의 책무) ①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 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구성한다”를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 창업지원 분야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등”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희망한”을 “위촉 해제를 희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u>&lt;신 설&gt;</u></p> <p>2. “기술창업”이란 <u>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u></p> <p><u>&lt;신 설&gt;</u></p> <p>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u></p> <p>3. ----- <u>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u> ----- -----.</p> <p>4. <u>“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u></p> <p>5. ----- ----- ----- -----</p>

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4.·5. (생략)

<신 설>

----- 7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

6.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7.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8.·9.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4조의2(창업기업 등의 책무) ①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 1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 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창업지원 분야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 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  
-----  
---- 경제정책실장-----  
-----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  
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  
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  
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  
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  
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를 따른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  
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희망한 경우
  2. ~ 4. (생략)
- <신설>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  
-----  
-----.

1. ----- 위촉 해제를 희망한 -----
2. ~ 4. (현행과 같음)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5. (생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한 경우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삭제>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 9. (생략)
- ②·③ (생략)

제15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창업지원) ① -----  
----- 창업기업 등-----  
-----  
-----  
----.

- 1. ~ 9.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